
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3. 31

3. 廢止理由

- 종전에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(국무총리훈령 제288호)에 의거 시·군 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,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이 공포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정이 되어 서산시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현행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

5. 檢討意見

- 본폐지 조례(안)은 국무총리훈령의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조례로 제정·운영되어 왔으나,

- '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,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
- 현행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와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되므로
- 현행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며,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(적용범위)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산시 소관 사무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. 운영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.